

2023학년도 1학기 재입학 전형 요약

1 재입학 지원 자격대상

미등록, 미복학, 성적불량(제적일로부터 2년 경과된 자), 학기초과, 자원퇴학 제적자

2 모집 단위

교육학과, 체육교육학과, 약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 약간 명

※ 폐지된 법학과의 경우 행정학과에 한하여 재입학 신청 가능

※ 의과대학, 치과대학, 간호대학 학생은 소속대학 행정팀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

3 전형 방법

- 1) 1단계: 학사지원팀 심사
- 2) 2단계: 대학별 심의위원회 심사(해당 대학·학과)
- 3) 3단계: 재입학 심의위원회 심사

※ 필요에 따라 학과에서 시험을 부가할 수 있음

※ 위 심사과정에서 하나라도 불가(不可)이면 재입학이 허가되지 않음

4 제출 서류

재입학 신청화면 내 청원서, 서약서, 학업계획서

5 전형 일정

- 1) 접수 기간: 2022. 11. 28.(월) ~ 12. 9.(금) 오후 5시까지
- 2) 접수처: 교무처 학사지원팀(언더우드관 B101)
- 3) 합격자 발표: 2022. 12. 29.(목)

6 유의사항

- 1) 재입학 후 첫 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, 일반휴학 할 수 없음
- 2) 재입학 이전의 재학기간, 학사경고 등의 학적사항, 취득학점 및 성적을 통산함
 - 재입학 전 일반휴학을 모두 활용한 학생은 재입학 후 일반휴학 할 수 없음
 - 재학연한은 이전 이수학기를 포함하여 12학기(당초입학생 기준)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학기초과로 제적됨. 단, 학기초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재입학하는 경우 최대 16학기(3학년 편입생은 최대 8학기)까지 재학할 수 있음.
 - 재입학 전 학사경고 사항은 유효하며 횟수를 누적 적용함. 단, 성적불량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재입학하는 경우 학사경고 1회만 받아도 제적됨
- 3)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함(재입학 합격 후 포기 시 재입학을 다시 할 수 없음)
- 4) 재입학 합격 후 학기 개강 전까지는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없음
- 5) 재입학 후 소속변경 할 수 없음